

建築士法 改正案의

廢棄를 보고



崔 鄉

全國의 建築設計를 法에 依해 專担하고 있는 建築士의 權益擁護와 親睦 그리고 技術的質的 向上을 研究檢討해서 보다 優秀作品을 著作해서, 國家에 이바지하여 建築主의 慾求를 充足시킨다는 大命題下에 特別法에 依해 設立된 大韓建築士協會의 存廢의 運命을 판가름 하는 建築士法中 改正法律案 國會建設委員會 與黨幹事인 柳光鉉議員外 23名의 이름으로 發議 國會에 上程하게되자 同改正案의 妥当性を 主張하는 側과 이는 時機尚早라고 主張하는 側面에 異見을 露呈시키면서 甲論乙駁, 한 때에는 建築界의 分裂의 憂慮까지 사기한바 있었으나 이번 國會會期中에 通過를 보지못하며 自動廢棄 됨으로서 모든 論爭은一段落을 보았다.

그간의 經緯를 더듬어 보면 提案者인 柳光鉉議員은 現行建築士法中 第22條에 明文化되어 있는 (設計圖書의 登錄) 建築士協會의 會員이 著作한 設計圖書는 建築士協會에 登錄을 받은 후가 아니면 行事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條項이 立法精神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東西古今에 없는 惡法이라고 指摘 全文削除를 改正案의 主要骨字로 하고 있는데 提案 理由로서는 現行建築士의 資格을 所定の 學歷을 가진者로서 一定한 期間동안 實務한 經驗을 가진者만이 國家考試에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國家考試에 合格한 者만이 該當建築設計를 할 수 있도록 規制하고 있음으로 建築士의 資格을 가진者가 設計한 圖書는 어디에 登錄을 할 必要조차 없이 行使하여야 된다는 點과 또한 協會 會員이 著作한 設計圖書를 協會에 登錄하지 않으면 行事할 수 없도록 規制하면 서울이나 道廳所在地에서는 傘下支部가 있어서 登錄하

는데 있어서 큰 不便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地方의 경우 市郡所在地에는 支部가 없음으로 設計圖書를 登錄하기 위하여 道廳所在地 등 建築士協會가 設置된 곳을 다녀와야 됨으로 時間的 또는 事務簡素化에 逆行한다고 하여 提案한 것이다.

더우기 柳議員은 이 法案을 國會에 提案 하기애 앞서 所屬政黨인 共和黨 政策委員會에 同改正案을 提示하여 檢討를 加하는 節次를 밟은바도 있는데 이때 共和黨에서는 이 改正案에 對한 一般의 衆論을 把握하기 위하여 建築界 3個團體에 對해서도 意見을 聽取한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建築學會에서는 口頭提言에서나 또는 公文으로서 同法 第22條는 마땅히 削除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建築家協會側도 削除하는 것이 좋다는 方向으로 意見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建築士協會側은 建築統計를 위해서나 會員의 團束을 위해서 必要하다는 式으로 大義名分이 서지않는 理由를 들어서 反對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界內에서도 意見이 엇갈리게 되어 꼭 있어야 된다는 必要性에 對한 絶對的인 名分이 서지 않게되자 黨으로서는 이 改正案이 理由있다고 간주하고 國會의 提案을 認定하며 柳議員은 5月29日 國會建設委員會 同僚議員인 車亨根議員등 23名의 同意를 얻어서 國會에 提出 建設委員會가 同30日字로 接受하여 審議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前記한바와 같은 經路를 거쳐서 同改正案이 國會에 上程하게 되자 同條項의 削除를 歡迎하는 側에서는 提案議員은 勿論 各界 要路에 對하여 激勸

와 聲援을 보내면서 이번 會期內에 通過를 바랐던 것이며 反對하는 建築士協會側은 이를 沮止하기 위하여 手段을 다한바 있으나 守勢에 물리면서 不利한 位置에 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改政案의 支持側이 優勢를 보이는 하였으나 이때에는 4月8日 새벽6시 서울市中에서 庶民아파트로 建立한 臥牛 아파트가 崩壞하면서 아파트 入住者 15世帶 70名中 死亡 32名 負傷38名이라는 建築史上 보기드문 不祥事의 發生과 攸리를 물고 일어나는 水原 市民會館의 崩壞 仁川驛前建物の 倒壞 등으로 建築施工에 徹底를 期해야 하겠다는 衆論이 高潮되어 있을 때이며 建築士의 無資格 無免許者들이 設計 또는 施工監理를 하고 있어 事故發生에 警鐘을 울리고 있는 때인지라 同法改政案의 審議에 있어서 慎重을 期해야 된다는 輿論이 높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月 臨時國會에서는 同改政案의 審議를 一段保留하고 9月 定期國會에서 다루도록 하였던 것인데 이번 會期에서 國會建設 委員會는 7代國會에서의 事實上 마지막 會期라는 點에서 徹底한 國政監査를 期하는데 專念하였고 그후는 71年度 예산審議過程에서 難産에難産을 거듭한 나머지 이에 많은 時間을 빼앗기고나니 一般案件 審議에는 時間에 쫓기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河川法 建設業法 測量法 公營住宅法 등 改正法律案에 對하여서는 輿野가 異見없이 法律審議小委에서나 常任委員會에서 通過시켰으나 國策遂行에 있어서 利害와 見解를 달리하는 都市計劃法과 土地收用法改政案 그리고 議員發議인 道路法中 改正法律案에 對해서는 輿野가 끈질긴 協商努力을 한 바 있으나 結局合意를 보지못함 으로서 一般案件審議의 時間을 完全히 빼앗기고 만 것이다.

또한 建築士法改政案은 黨部, 建設委의 柳光鉉 車亨根, 韓泰日, 金炯一議員등 거의 常設적이었던 法律審議小委에 廻付시킨바 있었으나 提案議員은 法案審議에 提案發言만 할 수 있고 審議權을 주지 않는다는 委員會 運營方針에 따라 別途 法律審議小委인 李賢宰 李重載, 崔翊圭 議員등의 班에서 審議하게 된바 있는데 이 小委는 12月18日 會議에서 廢棄의 決定을 내림으로써 事實上 廢棄된 것이다. 常任委員會에는 時間關係로 上程도 못하여 7代國會의 事實上閉幕을 뜻하는 12月24日 國會의 終幕으로 一段落을 지었다.

특히 國會法上으로 보아 一事不再理原則에 依하

여 同一會期內에 廢棄한 案條은 다시 上程시킬 수 없으며 7代國會가 끝나면 밀린 案件은 自動적으로 廢棄되도록 되어있어 事實上 完全히 廢棄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와같은 주어진 輿件으로서도 同法案의 改政案은 廢棄되었지만은 側面에서의 作用도 度外視할수 없었다는 事實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同改政案의 審議를 粗上에 놓은 막바지에서, 建築士協會側은 姜奉辰會長을 中心으로한 任員陳全員이 이 改政案의 通過를 沮止하기 위하여 強力한 對策을 講究하고 妥當性있는 理由를 提示하여 注目を 끌게한 바도 있는데 그 中에서도 現在 우리나라는 建築士의 絶對不足을 느끼고 있으며 特히 建築許可를 担当한 行政官署의 關係官마저 有資格者가 不足하다는 實情을 감안하여 볼 때, 建築士協會는 보다 健全한 建築을 위하여서는 圖書登錄制를 利用하여 建築物의 安全度등을 檢討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外에도 無免許建築士 또는 似而非 建築士들의 不法違法 非違등을 막기위하여서는 圖書登錄制의 存續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強力反論을 展開하여 立法府에서도 現時點에서는 이와같은 制度의 必要性을 認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國會의 輿論은 提案者였던 柳光鉉議員을 비롯하여 輿野의 議員들이 異口同聲으로 이번엔 建築士法案 22條의 削除는 廢棄시키지만은 이 條項이 惡用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條項을 活用해서 建築設計의 万全을 期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이와같이 波瀾萬丈의 “코스”를 달리면서 注目を 끌어오른 建築士法 改正에 對한 論爭은 廢棄되어 一段落을 지었는데 이로써 이問題가 建築界에 있어서 다시 再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지금에 있어서는 過去를 잊어 버리고 衆論에 따르는 民主方式을 各自가 수긍하고 앞으로는 建築界의 發展을 위하여 大同團結해야 될 좋은 契機를 마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附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建築設計가 一般과의 直接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以上 建築士들은 一般의 期待에 어긋남이 없도록 副應하는 데서만이 支持를 받을 수 있다는 事實도 銘心하기바라면서 建築士法 改政案의 廢棄를 무엇보다도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社團法人 韓國建設問題 研究所長)